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(신용평가등급이 A3-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3(생략)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p> <p>5~10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(중전과 동일)</p> <p>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 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3(중전과 동일)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p> <p>5~10(중전과 동일)</p> <p>② (중전과 동일)</p>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~③(생략)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~③(중전과 동일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(신설)</p>
<p>제25조의2(수익증권의 전환) ①~④(생략)</p> <p>⑤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</p>	<p>제25조의2(수익증권의 전환) ①~④(중전과 동일)</p> <p>⑤(삭제)</p>

<p><u>아니한다.</u></p>	
<p>제41조(환매수수료) ①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<u>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신탁계약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1조(환매수수료) <u>(삭제)</u></p>
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③(생략)</p> <p>④<u>수익자가</u>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<u>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③(종전과 동일)</p> <p>④수익자<u>는</u>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<u>있다.</u>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(생략)</p> <p>③<u>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(종전과 동일)</p> <p>③<u>(삭제)</u></p> <p>④(종전과 동일)</p>